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상점가 신용카드 사용분에 전통시장 적용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적용〉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6156호)

2024. 2.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정 은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1
IV . 검토의견	3
V . 입법의 재정영향	1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종배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1. 3.

다. 회 부 일 : 2024. 1. 4.

II.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매출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음.

한편 '22년부터 신용카드와 연동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이 발행되고 있으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어 상점가는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음.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에 상점가 사용분도 전통시장 사용분에 준하여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매출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III. 주요내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에 상점가를 추가하는 근

거를 마련함(안 제126조의2제2항제1호).

IV. 검토의견

1. 상점가 신용카드 사용분에 전통시장 적용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적용

현행	개정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126조의2) ○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공제항목 및 공제율: <table><tr><th>구분</th><th>공제율</th></tr><tr><td>- 신용카드</td><td>15%</td></tr><tr><td>- 현금영수증·직불카드</td><td>30%</td></tr><tr><td>-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문화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td><td>30%</td></tr><tr><td>- 대중교통 ※2023년 사용분</td><td>40% (80%)</td></tr><tr><td>- <u>전통시장</u> ※2023.4.~12. 사용분</td><td>40% (50%)</td></tr><tr><td>-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2024년 한시적용</td><td>10%</td></tr></table> ○ 공제한도: <table><tr><th colspan="2">총급여</th><th>7천만원 이하</th><th>7천만원 초과</th></tr><tr><td colspan="2">공제 한도</td><td></td><td></td></tr><tr><td colspan="2">기본공제 한도</td><td>300</td><td>250</td></tr><tr><td rowspan="3">추가 공제 한도</td><td>전통시장</td><td rowspan="3">300</td><td>200</td></tr><tr><td>대중교통</td><td></td></tr><tr><td>문화비</td><td>-</td></tr><tr><td colspan="2">24년 소비 증가분</td><td colspan="2">100</td></tr></table>	구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문화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	30%	- 대중교통 ※2023년 사용분	40% (80%)	- <u>전통시장</u> ※2023.4.~12. 사용분	40% (50%)	-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2024년 한시적용	1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 한도				기본공제 한도		300	25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	200	대중교통		문화비	-	24년 소비 증가분		100		상점가 신용카드 사용분에 전통시장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적용 ○ 공제대상: (현행과 같음) ○ 공제항목 및 공제율: <table><tr><th>구분</th><th>공제율</th></tr><tr><td>- 신용카드</td><td>15%</td></tr><tr><td>- 현금영수증·직불카드</td><td>30%</td></tr><tr><td>-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문화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td><td>30%</td></tr><tr><td>- 대중교통 ※2023년 사용분</td><td>40% (80%)</td></tr><tr><td>- <u>전통시장 및 상점가</u> ※2023.4.~12. 사용분</td><td>40% (50%)</td></tr><tr><td>-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2024년 한시적용</td><td>10%</td></tr></table> ○ 공제한도: (현행과 같음)	구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문화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	30%	- 대중교통 ※2023년 사용분	40% (80%)	- <u>전통시장 및 상점가</u> ※2023.4.~12. 사용분	40% (50%)	-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2024년 한시적용	10%
구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문화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	30%																																																				
- 대중교통 ※2023년 사용분	40% (80%)																																																				
- <u>전통시장</u> ※2023.4.~12. 사용분	40% (50%)																																																				
-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2024년 한시적용	1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 한도																																																					
기본공제 한도		300	25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	200																																																		
	대중교통																																																				
	문화비		-																																																		
24년 소비 증가분		100																																																			
구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문화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	30%																																																				
- 대중교통 ※2023년 사용분	40% (80%)																																																				
- <u>전통시장 및 상점가</u> ※2023.4.~12. 사용분	40% (50%)																																																				
-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2024년 한시적용	10%																																																				

* 이종배의원안 2024. 1. 3. 제출(의안번호 26156)

□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비자가 상점가¹⁾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지출액에 대하여 전통시장 사용분에 적용되는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 급여액의 25%인 최저사용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의미함.

공제율은 항목별로 차등적용되는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40%²⁾,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와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30%, 그 외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15%, 2024년 한시적으로만 적용되는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10%의 공제율이 적용됨.

또한,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기본 공제한도를 차등하여 적용하고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및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문화비)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한도를 별도로 적용하며,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한도가 앞의 한도들과 별도로 적용됨.

1) 참고로 개정안의 문언에 따르면 “상점가”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나, 이하의 논의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상점가”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상의 “골목형상점가”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논의함.

2) 2023년 대중교통 사용분은 8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및 공제 한도(요약)]

소득공제율		공제 한도		
구분	공제율	구분	7천만원이하	7천만원초과
❶ 신용카드	15%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❷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추가 공제 한도	300만원	200만원
❸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문화비) 등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	30%			
❹ 전통시장·대중교통 ※ 전통시장 2023.4.~12 사용분: 50% ※ 대중교통 2023년 사용분: 80%	40%			-
❺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 2024년 사용금액 분에 한시적으로 적용	10%		100만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1999년 9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도입 당시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10차례 적용기한이 연장되어 2025년 말에 일몰될 예정임.³⁾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1조 8,537억원 수준에서 2022년 3조 1,675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3년에는 3조 9,940억원, 2024년에는 4조 3,06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3) 최초 도입 시 적용기한은 2002. 11. 30.이었으나 2005. 11. 30. ⇒ 2007. 11. 30. ⇒ 2009. 12. 31. ⇒ 2011. 12. 31. ⇒ 2014. 12. 31. ⇒ 2016. 12. 31. ⇒ 2018. 12. 31. ⇒ 2019. 12. 31. ⇒ 2022. 12. 31. ⇒ 2025. 12. 31.로 적용기한이 연장되어 왔음

[연도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망)	2024년 (전망)
조세지출액	18,537	21,176	22,553	24,698	31,882	31,675	39,940	43,062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한편, 「유통산업발전법」의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의미⁴⁾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⁵⁾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곳⁶⁾을 의미함.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상점가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를 말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2. 상품 또는 영업활동의 특성상 전시·판매 등을 위하여 넓은 면적이 필요한 동일 업종의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이하 이 조에서 “특성업종도소매점포”라 한다)를 포함한 점포가 밀집하여 있다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구
 - 가. 가로 또는 지하도의 면적이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평균면적에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의 수를 합한 수를 곱한 면적과 용역점포의 면적을 합한 면적 이내일 것
 - 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을 것
 - 다.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수가 나목에 따른 점포 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5)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전국에 상점가는 건물형상점가·가로형상점가·상가주택형상점가·지하도상점가 등 총 350개가 있고, 상점가 내 총 69,169개의 점포가 운영 중에 있으며, 골목형상점가는 건물형·가로형·상가주택형 등 총 115개가 있고, 골목형 상점가 내 12,823개의 점포가 운영 중에 있음.

「소득세법」 상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상점가 및 골목형 상점가는 모두 기본공제율인 15%가 적용되고 있음.

참고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40%가 적용되는 전통시장은 2022년 기준으로 1,388개이고, 총 23만 2,206개의 점포가 운영 중임.

[2020년~2022년 전국 일반 상점가·골목형상점가 및 전통시장 현황]

(단위: 개)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일반 상점가	상점가 수	259	266	281
	건물형상점가	72	55	60
	가로형상점가	92	116	126
	상가주택형상점가	95	95	95
	지하도상점가	68	68	69
	점포 수	73,491	71,025	69,169
	건물형·가로형·상가주택형상점가	60,113	57,604	56,360
	지하도상점가	13,378	13,421	12,809
골목형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수	5	70	115
	건물형 골목형상점가	1	8	12
	가로형 골목형상점가	2	39	62
	상가주택형 골목형상점가	2	23	41
	점포 수	1,119	6,914	12,823
전통 시장	전통시장 수	1,401	1,408	1,388
	점포 수	240,623	241,080	232,206

자료: 「2022년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결과보고서」 내용 가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3. 12.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상점가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지출액에 대해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취지가 인정됨.

첫째, 상점가 내 점포에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적용됨에 따라 상점가에 대한 소비자의 소비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2022년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상점가 내 점포 수는 69,169개,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는 12,823개로 총 81,992개인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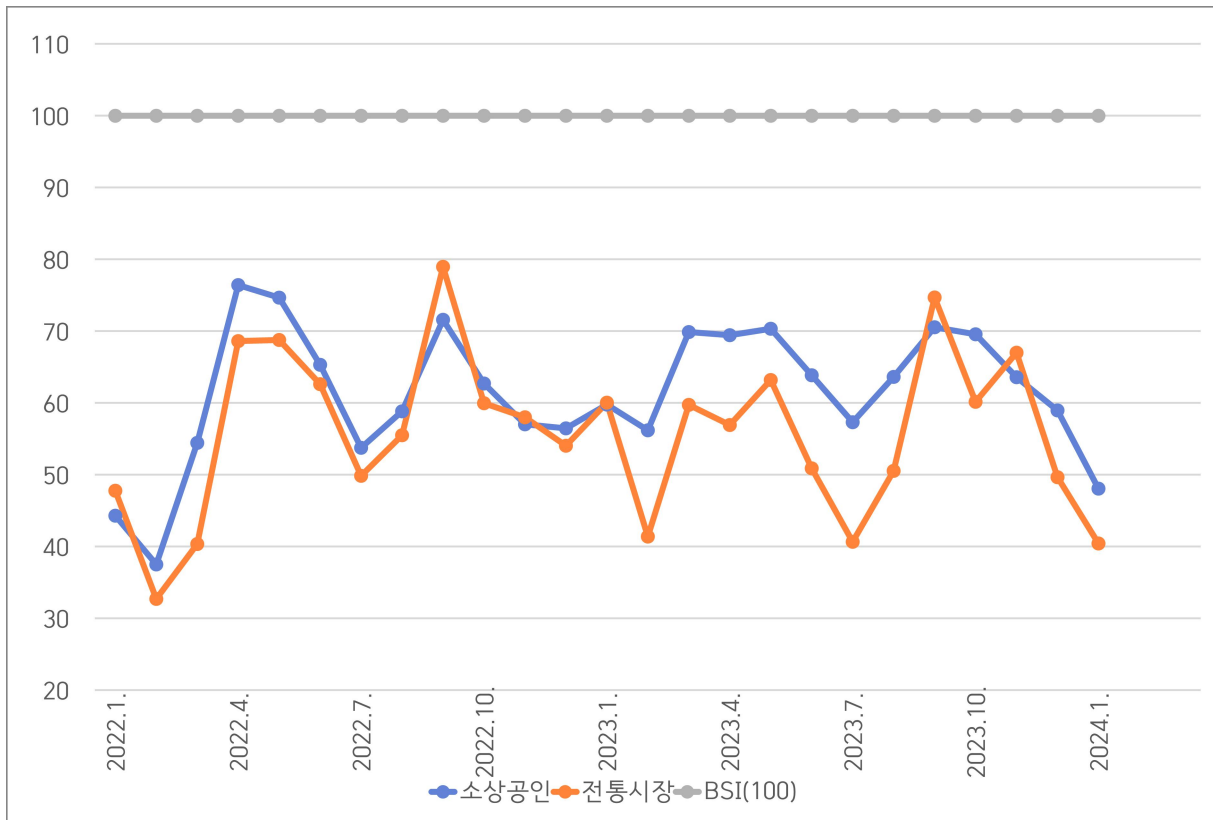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40%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점포는 전통시장 내 23만 2,206개의 점포에서 31만 4,198개의 점포로 약 35.3% 증가하게 됨. 따라서 소비자의 상점가 소비에 따른 부담이 경감되어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침체되고 있는 소비심리의 회복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둘째, 상점가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

2022년 이후 소상공인 체감 BSI⁷⁾가 전통시장 체감 BSI와 유사한 수준으로 낮게 조사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주를 이루는 상점가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는 상점가에 대한 소비 증가, 상점가 활성화 및 상점가 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7) BSI가 100을 넘으면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보는 소상공인(시장상인)이 더 많음을 뜻하며, 100 미만인 경우 그 반대를 의미함.

[소상공인시장 체감 경기지수(BSI)]



* BSI 100 이상은 경기 호전, 100 미만은 경기 악화를 의미

자료: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4. 1.

셋째, 세제지원적 측면에서 전통시장 내 점포와 상점가 내 점포에 동일한 수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양 자간의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상점가의 매출 및 고객 수 등이 전통시장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022년 기준으로 상점가 및 골목형 상점가에 입지한 점포의 점포당 매출액 및 점포당 고객 수는 각각 전통시장의 점포당 매출액

및 점포당 고객 수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상점가 내 점포와 상황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통시장 내 점포에 동일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2020년~2022년 상점가 및 전통시장 점포당 매출액 현황]

(단위: 만원/일)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일반상점가	50.9	59.6	62.6
골목형상점가	57.7	60.3	56.9
전통시장	44.1	44.6	45.8

[2020년~2022년 상점가 및 전통시장 점포당 고객 수 현황]

(단위: 명/일)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일반상점가	34.5	39.4	40.5
골목형상점가	36.3	39.3	37.2
전통시장	36.4	36.2	36.0

자료: 「2022년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결과보고서」 내용 가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3. 12.

둘째,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큰 규모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022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약 3조 1,675억 원⁸⁾에 달하는 상황에서 2022년 기준 전통시장의 연간 총 매출액 대비 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연간 총 매출액 비중은 47.6%에 이른

8) 과세당국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을 총액으로만 관리하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항목별 소득공제 금액 및 비중 등은 관리하고 있지 않음.

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과 같이 40%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상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대규모의 세수감소를 초래할 우려⁹⁾가 있음.

[2022년 상점가 및 전통시장 매출액 비교]

구 분	점포 수	점포당 매출액 (1일 기준)	연간 총 매출액
상점가 전체	81,992개	61.7만원	18조 4,648억원
일반 상점가	69,169개	62.6만원	15조 8,016억원
골목형상점가	12,823개	56.9만원	2조 6,631억원
전통시장	232,206개	45.8만원	38조 8,179억원

자료: 「2022년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결과보고서」 내용 가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3. 12.

셋째, 상점가 내 점포와 상점가에 입지하고 있지 않아 15%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일반 점포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음.

□ 한편,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개정안에서 언급되는 “상점가”의 의미가 불명확한바,

법문언 중 “상점가”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골목형 상점가” 등과 같이 수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9) 참고로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상점가 사용분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여 개정안에 따른 구체적인 세수 추계가 불가능함(국회 예산정책처).

IV. 입법의 재정영향

□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 중 4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전통시장 사용분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나,

개인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상점가 사용분에 대한 자료가 부재¹⁰⁾하고, 그 수준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객관적인 추계가 불가능하여 세수효과를 추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¹¹⁾

문 의 처
02)6788-5155

10)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하여 총급여 규모별·공제항목별 신용카드 사용액 집계자료만을 제공하고, 개인별 신고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며, 상점가 사용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집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음.

11)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고.